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

1. 대상 투자신탁 :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2. 변경 시행일 : 2018년 9월 3일

3. 변경사유

- ① 모투자신탁 추가(하이 코리아 적극성장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②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 황재연 → 책임 : 이석원, 부책임 : 황재연)
- ③ 환매수수료 삭제
- ④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추가
- ⑤ 기타 수익률 자료등 업데이트

4. 변경사항

가.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 내지 ③ (생략) ④ 이 투자신탁은 __ 같다. 1.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투자신탁은 __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하이 코리아 적극성장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__ 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__ 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라 한다)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제40조 (판매수수료)	① 내지 ② (생략) ③ 판매회사는 __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회사는 __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p>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내지 ⑤ (생략)</p>	<p>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p>제41조 (환매수수료)</p>	<p>①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30일미만 : 이익금의 70%</p> <p>2.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p> <p>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p>	<p>① 내지 ③ (생략)</p> <p>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p>	<p>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p> <p>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제45조 (투자신탁의 해지)</p>	<p>① 내지 ② (생략)</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④ 내지 ⑤ (생략)</p>	<p>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삭 제 ></p> <p>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제51조</p>	<p>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신 설>	이 신탁계약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환매수수료)는 변경시행일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갱신	-	- 투자운용인력(운용현황) - 재무정보(반기) -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집합투자업자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 규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 가>	2018-09-03 신탁계약 변경 - 모투자신탁 추가(하이 코리아 적극 성장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환매수수료 삭제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추가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 황재연 → 책임 : 이석원, 부책임 : 황재연)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책임 : 황재연	책임 : 이석원 / 부책임 : 황재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추 가>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 90% 이상 [모투자신탁 추가] - 하이 코리아 적극성장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환매수수료] - 모든 종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삭제] - 모든 종류 수익증권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 종류별 가입자격	1.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2.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환매수수료 없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	<추 가>	<p>※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지급 ※</p> <p>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라 한다)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p>

끝.